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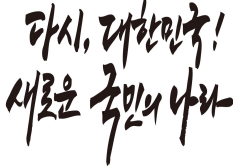


| | | | |
|---|--|--|---|
|  국토교통부 | <h1>보 도 자 료</h1> | |  |
| | 배포일시 | 2022. 5. 19.(목) / 총 4매(본문3, 참고1) | |
| 담당 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| 담 당 자 | • 과장 김은정, 사무관 노준기, 주무관 유태종 • ☎ (044) 201 - 3860, 3861 | |
| 보 도 일 시 | 2022년 5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19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 | | |

번호판 영치 · 무단방치 · 불법개조 없는 “안전한 도로환경 조성” 함께 해 주세요

- 23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... 도로환경 안전성 향상 기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*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* 17개 시·도와 경찰청,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

○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.

○ 이에, 국토교통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,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* 합동 일제단속**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.8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, 과태료부과,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.

*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, 경찰청, 한국도로공사, 한국교통안전공단

** '20년 25만대, '19년 30.8만대

- 지난해는 코로나-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'19년 대비 다소 감소(19.1%)하였으나,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(81.7%)되었다.
-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▲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(111천건) ▲무단방치 자동차 단속(52천건) ▲무등록 자동차(6천건) ▲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(21천건) ▲불법명의자동차(6.7천건) ▲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(70천건)한 자동차 등이다.



<화물차-적재함 판스프링 설치>



<화물차-후부 반사지 미부착>

<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>

| 구 분 | '21년 | '20년 | 증감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안전기준 위반(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) | 58,754 | 29,719 | 97.7 |
|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| 21,688 | 11,938 | 81.7 |
|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(이전등록 위반자) | 6,747 | 6,420 | 5.1 |
| 번호판 영치실적 | 111,351 | 106,980 | 4.1 |
|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| 52,007 | 53,003 | △1.9 |
| 무등록 자동차 단속 | 6,000 | 7,289 | △17.7 |
| 불법튜닝(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변경 등) | 11,917 | 34,668 | △65.6 |
| 소 계 | 268,464 | 250,017 | 7.4 |

□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(5.23.~6.22.)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,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,

-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,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로 아닌 자동차(대포차), 불법튜닝,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·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.



〈이륜자동차 - 꺾기 번호판〉



〈이륜자동차 -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〉

-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“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,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”이라면서,
-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(www.ecar.go.kr → 민원신청 → 불법자동차신고)에서 적극적으로 접수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노준기 사무관(044-201-386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무단방치 자동차

- 도로,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

□ 무등록 자동차 등

-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·변조 부착 자동차, 장기상속 미이전 자동차,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

□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

-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

□ 타인명의 자동차(속칭 대포차)

-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,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·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

□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(이륜자동차 포함)

-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,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
- *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불법튜닝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(하차 확인장치 미비, 선풍기준 위반)단속 강화

□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

- 미신고,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
- * 배달용 이륜차 번호판 고의훼손·가림 단속 강화

□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

-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,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